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, 잔여 사용기간,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, 인도적 지원 및 재난·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제6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